

##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영동군의회 의원 **김은하**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**임시회의 소집요구**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**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**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1. 일 시 : 2023년 10월 17일(화) 10:00
2. 장 소 : 영동군의회 본회의장

2023년 10월 10일

영동군의회 의장 이 승 주